

URUGUAY ROUND와 知的所有權 (2)



李 氣 盛
(特許廳 審判所長)

目 次

- I. 머리말
- II. 우루과이 라운드의 推進背景
- III. 閣僚宣言文內容 및 協商構造
- IV. 議題別 先後進國의 立場
- V. 知的所有權 保護의 最近動向
 - 가. 美國等 先進國主張의 背景
 - 나. 우루과이 라운드에서의 論議事項
 - 다. WIPO에서의 推進事項
 - 라. 美國의 知的所有權 保護를 위한 動向
- VI. 맺는말
(고딕은 이번號, 명조는 지난 및 다음號)

IV. 議題別 先後進國의 立場

開途國들은 保護主義措置의 凍結 및 撤廢를 內容으로 하는 Standstill/Rollback이 다른 모든 協商에 우선

하여야 하며 既存의 商品貿易에 關한 論議(Old Issues)에 對한 各種措置가 더욱 重要하다고 主張함에 反하여 先進國들은 서어비스, 投資, 知的所有權等 New Issues에 더욱 重點을 두고 있는 것이 先後進國間의 根本的인 立場의 差異라 하겠으며, 議題別 立場差異는 다음과 같다.

가. Standstill/Rollback

개도국들은 Standstill Rollback의 약속은 政治的 約束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實質的 기속력을 갖는 措置로서 措置對象은 Grey Area(OMA, VER)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主張한다.

한편 先進國들은 同 約束은 政治的 約束으로 具體的 事項에 關여해서는 안되며 Grey Area에 속하는 規制의 撤廢는 各國政府의 自發的 措置에 期待해야 할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나. 關 稅

선진국의 關稅는 충분히 引下되었음으로 개발도상국, 특히 先發開途國(NICS)들이 關稅引下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

다. 非關稅

GATT는 11條(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와 13條(수량제한의 무차별 원칙)을 中心으로 하여 비관세 장벽 설치를 規律하고 있으나 規制措置의 不明瞭性和 GATT 規程을 우회하는 規制조치의 남발로 인하여 수량제한을 포함한 각종 非關稅장벽의 완화 또는 철폐方案을 놓고 先後進國間에 격렬한 論爭을 벌이고 있다.

라. 섬유류

지난 25年間 섬유류 交易는 GATT體制 밖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規制對象品目을 계속 擴大하면서 現存의 MFA IV에 이르렀는 바, 섬유수출개도국들은 섬유류 交易의 GATT복귀 및 섬유류 交易의 完全自由化를 主張하고 있는데 比하여 섬유수입선진국들은 現行體制(MFA IV)의 維持가 섬유유역질서유지를 위하여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며 MFA IV가 끝나는 1991年 8月 以後의 問題는 追後 論議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마. 天然資源

加工 및 半加工 형태를 포함한 天然資源商品의 交易 自由化를 爲하여 Tariff Escalation을 포함한 關稅 및 비관세조치의 완화 및 철폐를 目標로 하고 있으며 天然

資源의 範圍를 광물 및 비철금속 임산물 수산물의 3개 분야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 範圍를 보다 확대할 것인지가 問題로 되어 있다.

바. 熱帶產品

커피, 코코아, 茶, 熱帶果實, 熱帶木材, 고무, 黃麻 등이 論議對象으로 되어 있으며 이들 品目은 全量輸入 依存, 嗜好性 또는 奢侈性品目이라하여 關稅나 課徵金의 標의가 되어 왔으며 이같은 선진국의 輸入制限措置는 熱帶開途國의 輸出收入確保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으로 赤道地域에 位置한 最貧開途國의 開發을 支援한다는 次元에서 대체로 先後進國間 合意가 이루어져 있으나 具體的인 협상주진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대립이 있다.

사. 農產物

E.C는 農產物은 工產品과 다른 特性이 있어 GATT 規定으로 規制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비하여 農產物輸出國(美國, 濠洲, 캐나다, 뉴질랜드등) 農產物交易에 對한 各種制限措置는 철폐되어 早速히 自由化되어야 하며, 各種補助金의 完全撤廢를 爲한 段階的 接近方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 緊急輸入制限措置(Safeguards)

開途國은 GATT 19條의 適用에 있어서 輸入制限措置의 國別差別適用에 반대하며, 또한 發動要件인 “國內生産業者에 對한 심각한 被害”의 正確한 概念定義가 必要하다고 主張하는데 反하여 先進國은 選別適用은 GATT 6條에 適合하며 Grey Area措置는 合法化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 補助金 및 相計關稅

東京라운드에서는 “補助金 및 相計關稅協約”을 체결하는데 성공하여 補助金과 相計關稅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후에도 여전히 많은 國家들이 自國의 수출품에 補助金を 지급하고 있으며 수입품에 對하여 恣意的인 相計關稅부과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農產物에 대한 補助金 問題가 커다란 貿易마찰 問題로 대두되고 있다.

차. 貿易關聯投資

外國人投資와 多國籍企業의 活動에 對한 各國의 政策的 介入이 各種規制를 불러 일으키고 이러한 制限은 效率的인 投資配分을 阻害함으로써 國際的 生産設備分

布를 歪曲하게 되어 結果적으로 世界貿易에 惡影響을 준다는 美國등 先進國의 主張으로 外國人 投資의 內國 民待遇를 要求하고 있다.

(例) 投資業種制限, 輸出義務등 投資條件, 國營貿易 機構, 國內産業에 대한 補助金/送金制限등.

카. 서어비스

이미 머리말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서어비스의 비중은 점차 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서어비스의 定義, 統計등에 關하여 아직 確實한 基礎資料가 缺如되어 있는 실정이다.

先進國은 금번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서어비스무역의 自由化가 GATT規定으로 制定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開途國은 자국의 文化的 背景에 따른 서어비스의 特性이 있으며, 開途國 待遇原則等을 考慮하여 商品協商과 個別로 協商이 이루어질 것을 주장한다. 또한 서어비스중 어떤 범위까지를 포함할 것인가에 따라 자국의 이해가 상반되고 있으며, 後進開途國들은 人力의 이동을 포함하는 건설등의 서어비스도 포함될 것을 주장하고 있다.

V. 知的所有權 保護의 最近動向

가. 美國등 先進國主張의 背景

美國은 最近 莫大한 貿易赤字가 쌓여 世界 最大의 債務國으로 轉落하게 되었으며, 이를 是正하기 위하여서는 美國이 아직 比較優位를 점하고 있는 分野의 貿易自由化가 切實하게 되었다.

그런데 美國의 製造業은 大部分 대의 경쟁력을 상실했으며 아직까지 比較優位가 있는 分野는 航空機나 高性能情報通信器機등 尖端産業과 農業, 서어비스業, 資本力을 배경으로한 多國的企業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美國은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하여 尖端기술의 保護를 위한 知的所有權保護와 農產品 및 서어비스 交易의 自由化와 外國人 投資環境의 自由化를 規範化 하려는것은 이미 우루과이 라운드의 背景에서도言及된바 있다.

그중에서 知的所有權의 保護의 必要性은 日本이나 圭라파의 선진국에 있어서도 程度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事情이므로 선진국간의 支持를 받고있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後進國들은 利害가 다름으로 이를 反對하고 있다.

이와같은 선·후진국간의 利害의 差는 全世界의 特許登錄件數가 350萬件이며(1972기준) 그중 330萬件이

先進國 特許廳에 등록된 것이며 나머지 20萬件(約 6%)만이 開途國 特許廳에 등록된 것이다. 이 20萬件中에서도 先進外國人이 개발도상국에서 特許받은 것이 17萬件이고 나머지 3萬件(全體의 0.8%)만이 後進國의 內國人 特許인 것이다.

이러한 事實을 볼때 特許는 선진국에 의하여 거의 獨占되어 있으며 특히 開途國에 등록된 先進國의 特許는 후진국에서 實施되어 產業에 기여한다면 바람직하지만 이들 外國人所有 특허의 實施率은 5% 未滿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는 餘他는 當該後進國에서 특허된 물건이 생산되는것을 阻止하기 위한 防衛의性格의 特許인 것이다.

이러한 防衛特許는 當該開途國의 경제개발에 아무런 기여도 없을뿐 아니라 研究開發意慾을 沮傷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WIPO에서 Paris條約 第5條를 改正하여 不使用 外國人 特許를 使用코자 하는 內國人이 있을 경우에는 強制實施權을 주도록 하자는 論議가 오랜동안 계속되어왔다.

우리 特許法 第51條1項에서는 正當한 理由없이 계속하여 3年以上 特許發明을 不實施하거나, 國內需要 또는 輸出需要를 充足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通常實施權의 裁定을 特許廳長에게 要請할 수 있게 되어있다.

先進國이 主張하는 知的所有權 保護의 範疇에는 尖端技術을 포함한 工業所有權에 重點이 있지만 其外에도 著作權은 勿論 컴퓨터프로그램, 半導體 Layout, Data Base, 畫像應答 또는 비데오 Text등의 New Media의 保護를 포함하는 것이며 Trade Secret도 넓은 의미의 知的所有權의 範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論議가 되고 있다.

나. 우루과이 라운드에서의 論議事項

1) 貿易과 關聯된 知的所有權

美國等 先進國이 知的所有權의 保護를 우루과이 라운드의 議題로 提起했을때 많은 後進國들은 GATT는 商品貿易에 관한 規範이며 知的所有權은 무역과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의제로 포함시키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하여 反對하였다. 그러나 선진국은 現在는 위조상품에 관하여 GATT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圓滑한 國際貿易을 위해서는 지적소유권의 保護가 必須不可缺하다고 하여 결국은 의제로 채택되게 되었다. 다만 論議의 범위는 무역과 관련된 知的所有權으로 限定하여 우루과이 라운드 宣言文에서는 "Trade Related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rade in

Counter Feiting"이라는 Title로 되어있다. 위 Title에서 알수있는 바와같이 무역에 관련된 범위내에서 지적소유권에 관한 협상을 展開하도록 되었으나 사실 무역의 개념이나 관련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抽象的이고 明白한 基準을 세우기가 어려운 것으로 많은 論難의 餘地가 있다 하겠다.

미국은 Trade Related를 넓게 해석하여 知的所有權 全般的인 보호를 주장하고 있으며 많은 후진국들은 이미 UN機構로서 WIPO가 있으며 지적소유권 一般에 관한 論議는 同 機構에서 할것이고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무역과 直接的이고 긴밀한 관계가 있는 事項을 制限的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2) 尖端分野의 特許紛爭

사실 美國으로서는 自國의 技術이 日本을 爲始한 外國에 의하여 模倣되어 많은 투자비를 들여 研究開發한 後에도 商業的 利益에 있어서는 일본에게 機先을 빼앗기는 많은 경험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日本人에 대한 뿌리깊은 不信과 경험을 이들 주장의 저변에 깔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日本에게 尖端分野에서의 선두를 빼앗겨서는 안된다는 美國人的 自존심은 지난번 日本의 후지쓰社가 미국의 웨어차일드를 2억 5천만불에 인수코자 하는것을 미정부 및 의회측에서 反對하고 결국은 그 절반가격에 美國內業體가 인수한 事例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本稿의 序論에서도 引用된바 있는 Texas Instrument의 日本 8個電子業體와 우리나라 三星電子를 相對로한 반도체수출과 관련된 특허권침해 소송은 우리로서는 처음 당하는 大型 國際特許紛爭이지만 美國과 日本 및 歐洲各國間에는 大部分의 첨단분야의 커다란 발명이 있을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大型 國際特許紛爭이 일어났으며 그 利害關係는 당해 業界의 死活이 걸린 것이다.

이러한 紛爭中 현재도 계류중인 몇가지 事例를 들면 i) 所謂 第3世代의 纖維 또는 魔法의 糸라고 불리는 아라미드섬유를 둘러싼 美國의 듀폰社와 화란의 엔카社의 特許紛爭은 日本까지 먼저 이들의 日本合作社인 도레이, 住友등도 휘말리게 되었으며 ii) 유전자조작에 의한 新型血栓溶解劑 PTA를 둘러싼 미국의 제넨텍社와 영국, 日本의 藥業界間의 特許紛爭 iii) 非結晶質 合金인 Amorphous를 둘러싼 美國의 Allied Chemical社와 日立金屬등 日本業體와의 紛爭등으로 이를 모두 列擧할 수 없을 程度이다.

우리 政府에서는 첨단산업의 적극지원 육성을 약속하고 있지만 尖端製品의 生産 및 輸出에는 外國의 特

허기술에 의한 制約이 커다란 障礙要因으로 豫見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VTR의 경우는 매출액의 12% 程度의 Royalty가 支給되는 것으로 推計되고 있으며 餘他の 高度技術을 要하는 製品에도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할 것이 확실하다.

3) 우루과이 라운드 宣言文의 內容

현재의 GATT規定은 9條 6項, 12條 32項 C, 18條 B 10, 20條 D에서 주로 偽造商品防止에 關하여 規定하고 있다. 偽造商品 問題는 1970年代 중반이후 프랑스의 香水商標와 미국의 Blue Jean에 대한 偽造商品이 늘어나면서 더욱 빈번히 論議되기 시작하였다.

美國은 이러한 偽造商品 問題뿐만 아니라 知的所有權 전반에 걸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에 대한 各國의 主張에 앞서 우루과이 라운드의 宣言文中 知的所有權에 關한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효과적인 知的所有權保護 및 保護措置로 貿易障壁을 除去하기 위하여 GATT 規定을 明瞭化하고, 적절한 경우 새로운 規定과 原則을 마련한다.

○ GATT內 既存推進作業을 考慮 偽造商品 交易問題를 取扱할 多者間 Frame Work를 開發한다.

○ 同 協商은 WIPO 및 其他 關聯國際機關의 補充의 代案을 考慮하여 隨行한다.

4) 第1次 知的所有權 協商그룹會議

우루과이 라운드 宣言에 따라 지적소유권에 關한 회의가 제네바에서 있었는데 87.3.25에 第1次會議을 갖고 87.6.10에 第2次會議가 開催되었으며 第3次會議는 87.9.23~9.25間 開催기로 합의되었다.

우리政府에서는 1次, 2次會議에 代表團이 파견되어 제네바代表部와 함께 同 會議에 참가하였다. 우선 1次會議에서의 論議事項과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知的所有權의 무역관련 측면

대다수의 참가국들은 지적소유권의 무역관련 측면이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日本은 지적소유권이 무역과 관련된 具體的인 사례를 각국이 사무국에 제출하여 이들 事例를 中心으로 하여 차기협상을 진행할것을 제의하여 참가국들이 이의없이 채택하였다.

② GATT관련 규정의 검토

미국등 선진국은 현행 GATT규정이 제도 및 시행년에서 未洽한 실정이므로 多者間規範의 早期設定이 필요함을 力說하였으나 開途國들은 현행 GATT협정과 관계국제협약 및 기존의 GATT作業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것을 주장하면서 早期規範制定에 反對하였다.

③ 偽造商品 交易

미국은 82.10.18 東京라운드에서 제안한 위조상품수입방지협정(안)에 各國이 빠른시일내에 서명할것을 제의하면서 위조상품의 개념을 상표권침해에 한정하지 않고 知的所有權 全般에 걸친 침해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토의는 年內에 종결짓고 同協定(안)이 조인된후에는 토의를 지적소유권 일반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던바 EC, 캐나다, 호주등은 同協定(안)의 개선 및 재검토에 찬성하였으나 브라질, 알제틴, 인도, 에질트등 開途國들은 미국의 제안에 반대하였다.

④ 開途國에 대한 고려

한국은 각국의 지적소유권 보호조치가 선진국의 對 開途國 기술이전을 위축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인도등의 強硬開途國도 지적소유권의 보호가 交易의 축소를 초래치 않도록 선진국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⑤ 關聯情報蒐集問題

선진국들은 GATT사무국이 관련기구의 협조하여 지적소유권에 관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배포할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인도, 에질트등은 회원국이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자료만을 사무국이 수집토록하면 충분하다고 反論을 제시하여 양측의 질충안으로서 사무국이 기존자료를 中心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기타 국제기구와 관련된 자료는 이들관련 기구에 요청하기로 하였다.

⑥ WIPO의 협상참가문제

WIPO는 본 협상에 정식참여자격을 요청하였으며 CCC등 수개의 국제기구는 옵서버자격을 요청하여왔다.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WIPO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WIPO의 능동적인 참여로 지적소유권에 관한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저하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미국은 필요시마다 WIPO와 특별회의를 하던 족하지 정식참가자격을 줄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CCC등의 옵서버자격도 등 기구들의 성격을 확인하여 추후에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5) 第2次 知的所有權協商그룹회의(87.6.10)

2次會議에서는 주로 知的所有權의 貿易關聯側面과 偽造商品交易, WIPO 및 CCC등 기구의 협상그룹회의의 참가자격에 대하여 논의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적소유권의 무역관련 측면

지난 1次會議時의 합의에 따라 각국은 지적소유권이 무역과 관련된 사례를 제시하였는데 주요국가는 미국, EC, 日本, 北歐등으로 이들 국가들이 貿易과 관련된 事項으로 제시한 공통사항은 다음과 같다.

○ 물질특허의 불인정

· 특허대상범위의 제한(화학, 약품, 식품분야)

○ 특허보호기간의 부적정

○ 특허법상 강제실시권 조항

○ 컴퓨터 소프트웨어, 음반, 비디오 Text등의 보호의 未備

○ 특허권침해의 경우 벌칙조항의 미비

미국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은 GATT규정의 未備임을 능누히 역설하면서 다음 회의시에 새로운 국제규범을 위한 구체적 제안을 하겠다고 하였으며 EC는 지적소유권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보호에 의한 貿易上的 왜곡도 重大한 문제라고하여 現在 모든 선·후진국의 공통관심사가 1937 미관세법 第337條의 改正임을 시사하였다.

개도국들은 위와같은 사항들은 지적소유권자체에 관한 문제이므로 WIPO에서 논의될 것이고 GATT에서 논의되기에는 적당치 않은것이라고 反對하여 양측의 타협안으로 상기 제안사례별로 관련된 GATT규정을 명시토록하여 GATT와의 관련성을 명백히 하기로 하였다.

② 위조상품 교역

미국은 위조상품 교역에 관한 협정안('82 동경라운드시 제시안)을 작국이 서명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이

에대한 각국의 반응이 매우 부정적이라 미국은 지적소유권 전반에 대한 Code를 제안할때 동협정(안)의 주요 골자를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EC는 82년 협정안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언급하고, 위조상품 교역상의 최대문제는 관계규정을 집행하는 장치의 결여라고 강조하면서 82년 협정안에 저작권, 의장권, 컴퓨터 Software, 지명표기등의 분야도 추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일본도 82년 협정의 서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정하면서, 위조상품 교역은 여타 지적소유권 분야와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부 개도국이 위조상품 교역을 우선 협의하고 여타 문제는 추후 협의하자는 방식에 반대입장을 보여 별다른 결론을 얻지 못하였다.

③ 타 국제기구 활동과의 관계 및 읍서버 자격인정 등

WIPO 및 CCC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는바 이들 두 기구를 協商구를 議長이 제시하는 조건으로 협상그룹 회의에 참여시킬것을 제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자기회의는 9.23~25개최기로 합의하였다.

6) 우리나라의 立場

우리나라는 美國과의 兩者協定에 의하여 이미 선진국들이 제시한 무역관련 知的所有權 保護를 위한 제도를 거의 모두 採擇하여 1987.7.1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美國등 선진국의 주장과 같이 새로운 知的所有權 保護의 強化協商이 妥協되더라도 별다른 問題는 없다고 할 것이다. <계속>

(案) 偽造商品 申告센터 利用 (內)

特許廳에서는 偽造商品을 防止하기 爲하여 管理局 調査課內에 偽造商品 申告센터를 設置 運營키로 하였습니다. 國民 여러분께서는 偽造商品의 根絶을 爲하여 積極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偽造 商品이란 무엇인가

◎ 널리 알려진 他人의 商標나 包裝等を 盜

用한 商品

◎ 虛偽로 原產地를 標識한 商品

◎ 他人의 商品인 것 처럼 詐稱한 商品

偽造商品 取扱者에 대한 罰則

◎ 2年 以下の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の 罰金

偽造商品 申告센터 位置 및 電話

◎ 位置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번지

◎ 電話 : 568~0121(特許廳 調査課)